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9. 7(금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최대경, 주무관 정치영 • ☎ (044) 201-3755, 4082, 4752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건축 허가 및 착공 시 제출 도서 변경 관련

□ 2015년 10월 5일 개정된 「건축법 시행규칙」은 당초 건축허가 시 제출토록 한 ‘토지 굴착 및 옹벽도’, ‘건축설비도’, ‘시방서’ 등을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

○ 지반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흙막이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착공단계에서 ‘토지 굴착 및 옹벽도(흙막이구조도 등 포함)’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.

※ 나대지(裸垜地)가 아닌 기존건축물이 있는 건축현장은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사 시작 전 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함을 고려.

이번에 흙막이가 붕괴된 동작구 상도유치원 인근 건축현장도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임

< 보도내용 (9.7, 매일경제) >

◆ 5개월前 유치원 붕괴위험 경고했지만 방치...“대형참사 날뻔”

○ 허가 규정 완화 이후 건축 허가

- 2015년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 규정을 느슨하게 한 것이 이번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.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지적된 ‘흙막이’ 공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